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안

- 제 정 : 2009. 3. 5.
- 일부개정 : 2009. 6. 1.
- 일부개정 : 2009.11. 3.
- 일부개정 : 2011.10. 7.
- 일부개정 : 2012. 5.18.
- 일부개정 : 2012.11.15.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업무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영세칙 시행에 관하여는 고시 및 업무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수수료 산정

제3조(파생제품 등에 대한 인증수수료)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신청한 파생제품 인증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초 인증제품과 투입 원료물질은 동일하나 보조물질의 차이 또는 포장재질의 차이로 파생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심사일수를 서류심사 2일과 현장심사 2일로 한다. 다만, 최초인증 신청제품과 동일시점에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심사 일수는 1일로 한다.
2. 최초 인증제품과 내용물은 동일하나 내용물의 용량과 포장의 크기 또는 액세서리 등의 차이로 파생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심사일수를 서류심사 1일과 현장심사 1일로 한다. 다만, 최초인증 신청제품과 동일시점에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 1일로 한다.
3. 파생제품 인증 신청제품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비 비용의 30%를 감하여 산정한다.

②환경성적표지 유효 인증제품에 대해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는 파생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의2(특별협정 등의 지원) ①업무규정 제30조의 특별협정 등에 따른 외부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과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
2. 환경부의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자사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및 기관
3.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②특별협정에 따른 외부기관 및 기업의 해당 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참여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1. 누적 인증 신청제품수가 1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2. 누적 인증 신청제품수가 100개 초과 2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3. 누적 인증 신청제품수가 20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

제3조의3(저탄소제품에 대한 인증수수료) ①고시 별표 2의 저탄소제품인증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심사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탄소배출량 인증시점과 비교 시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고시 부칙에 따라 탄소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의 경우 기본심사일수는 서류심사 6일, 현장심사 2일로 정한다.
2.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제품이 업무규정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수수료 산정은 제3조의4를 따른다.

제3조의4(동일제품·제조원 인정에 관한 인증수수료) 인증 신청제품이 업무규정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심사일수를 서류심사 2일과 현장심사 2일로 한다. 다만, 최초인증 신청제품과 동일시점에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심사 일수는 1일로 한다.

제3조의5(저탄소제품 인증 대상제품의 범위) 저탄소제품 인증 대상제품의 인정범위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업무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기준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품명은 같은 경우
2. 기준제품과 상품명은 다르나 성능 등이 개선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경우
다만, 기준제품과 같은 시점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제외

3. 기준제품과 함께 시장에 출시되고 있더라도 기준제품의 갱신제품임이 명확한 경우

제2장 탄소성적표지 인증번호부여 및 인증서교부

제4조(인증번호 생성) ①인증번호는 제품군분류, 인증년도, 인증순서로 구분된다.

예시) A-2009-001

②제품군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1. 비내구재 일반제품(A)
2. 내구재 일반제품(B)
3. 생산재 일반제품(C)
4. 서비스(D)
5. 에너지사용 내구재(사용 시나리오가 반영된 제품)(E)

③인증년도는 4자리수로 나타낸다.

④인증순서는 3자리수로 나타낸다.

제5조(인증번호 부여) ①동일제품은 최초 인증제품과 동일한 인증번호를 사용한다.

②파생제품은 최초 인증제품의 인증번호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인증서 교부) 파생제품, 동일제품, 동일제품·제조원 인정에 대한 인증서는 최초 인증제품의 인증서 교부 방식을 따른다.

제3장 탄소성적표지 표시방법

제7조(탄소배출량 표시방법) ①탄소배출량은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②탄소배출량 단위는 mgCO₂, gCO₂, kgCO₂, tCO₂, ktCO₂로 표시한다.

③탄소배출량은 최대 4자리수까지 표기할 수 있으며 천단위의 구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탄소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다.

⑤배출량 단위를 변경함에 따라 실제 배출량보다 적게 표시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의 사용) ①고시 별표 1의 제1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탄소성적 산출 기준인 기능단위를 표지와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②도안 사용 시 고시에서 지정한 색상 외의 색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추가사항) 탄소배출량의 표기에 관하여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전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준용한다.

제4장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관리

제10조(인증심사원 구분 및 요건) ①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은 「환기환산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로 구분하며, 심사원별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 중에서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 선임심사원 : 인증심사원으로서 활동한 심사 횟수가 5회 이상인 자 중에서 기술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에서 검증심사단의 선임심사원은 전과정평가 정규교육과정(석사)을 이수하고 해당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심사원 : 심사원보로서 심사참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중에서 기술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심사원보 : 「환기환산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위촉된 자

③인증심사원 활동 횟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제2항제1호에서 “기술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단장이 각 호에 따라 심사원을 평가하여 우수등급(평균 4.0 이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전문성 : 전과정평가, 제품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전문 능력의 자질함양 정도

2. 대응성 : 신청기업 및 기술원, 인증심사원 간의 응대 수준

3. 청렴성 : 업무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 정도

4. 지원성 :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지원·관리의 정도

5. 소통성 : 신청기업 및 기술원, 인증심사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도

⑤제4항에서 심사단장이 심사원을 평가하는 방식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에 동행한 심사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평가표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원의 권한 및 책임) ①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의 심사단장은 선임

심사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기술원장이 제시한 기한 내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심사일정 조율
2. 인증심사 진행
3.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및 판례집의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및 보고

③심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심사단 지휘 및 통솔
 2.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과 종합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시, 심사 판례집의 작성 및 제출
 5. 필요시, 심사결과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보고
 6. 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윤리규정 및 업무규정 제39조에 따른 기밀·청렴 준수
- ④심사원은 심사단장을 보좌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원 등록)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중에서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원의 자격을 결정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서식 제3호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①인증심사원은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 보수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심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제시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기술원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허위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업무규정 제38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업무규정 제39조의 기밀·청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심사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심사비 지급) 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심사비 지급은 심사원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9.3.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른 선임심사원은 기술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귀하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운영세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